

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3026 |
|----------|------|

2022년 2월 10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1년 10월 29일, 송재혁, 오한아 의원
- 나. 회부일자: 2022년 1월 25일
- 다. 상정일자: 제30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2년 2월 10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송재혁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-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과 식음료 배달 주문이 활성화됨에 따라 아이스팩 사용량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.
 -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이스팩은 플라스틱 성분의 젤이 들어 있는 형태로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버려짐에 따라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.
 - 따라서 아이스팩 수거·재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며, 더 나아가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아이스팩의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장,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.
-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 유도 및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계획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~제6조).
- 이행실태의 점검 및 사업 종료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~제8조).
-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자원순환기본법」, 「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참조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: 이재효)

가. 제정사유

-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온라인 쇼핑과 배달 문화의 활성화로 인해 아이스팩 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, 이의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.

이에 따라 서울시 16개 자치구에서는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, 관내 사회적협동조합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아이스팩 재사용 수거사업을 실시하는 등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- 본 제정조례안은 아이스팩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의 아이스팩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젤 형태의 아이스팩(이하 “젤 아이스팩”)은 고흡수성수지¹⁾를 냉매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거·운반 및 처리·처분 등 폐기물 관리의 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²⁾를 유발하고 있음. 최근에는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이나 전분 등의 소재로 만든 친환경 아이스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, 여전히 전자의 비중이 40%³⁾에 이르고 있는바, 젤 아이스팩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본

1) 高吸收性樹脂(Super Absorbent Polymer): 다량의 물을 흡수할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기저귀 등에 사용되며, 물과 함께 냉매로 사용하면 얼음보다 냉기가 오래 지속됨

2) 아이스팩의 냉매로 사용되는 고흡수성수지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,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 소요되며, 불법으로 버려지면 하천과 지하수로 유출되어 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.

3) 물 전분으로 만든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가속화 추진(환경부 보도자료, 2021년 4월 28일)

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.

- 본 조례안은 목적과 정의, 책무 등을 제1조에서 제3조까지 규정하고 있고, 제4조부터는 아이스팩 순환 유도, 사업계획 수립, 사업비 지원, 표창 및 시행규칙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등 총 10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, 입법 체계나 내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<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>

| 조(제 목) | 내 용 |
|------------------|--|
| 제1조(목적), 제2조(정의) | - 목적: 아이스팩 순환시스템 구축 및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 - (친환경)아이스팩, 재사용, 아이스팩 순환 등 관련 용어 정의 |
| 제3조(책무) | -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에 대한 시장, 사업자, 시민의 책무 규정 |
| 제4조~제10조 | - 아이스팩 순환의 유도, 사업계획의 수립, 사업비 지원, 이행점검, 사업완료 보고, 표창 및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 규정 |

- 다만, 환경부는 작년 5월에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도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젤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⁴⁾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으며, 실제 부과는 2023년 4월경에 이루어질 예정임.

이에 따라 젤 아이스팩의 판매단가가 친환경 아이스팩의 단가보다 50% 이상 높아지게 되면 젤 아이스팩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젤 아이스팩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.

4) 1kg당 313원, 일반적인 아이스팩 무게를 300g으로 가정하면 약 94원 부담금 부과 후 판매단가: 친환경 128원/개 고희수성수지 199원/개(부과 전, 105원/개)

- 또한, 현행 「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」 등⁵⁾에 따라 시장은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·사업자·단체 등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관련 사업 계획의 수립 또는 표창 등을 수여하기 위한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황임. 젤 아이스팩의 환경적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본 조례안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입법경제 상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.

아울러 본 조례안의 제정은 환경적 위상이 비슷한 폐의약품, 종이컵, 폐형광등 및 폐배터리 등 개별 폐기물에 관한 조례 제정 요구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5) 「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」

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의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 순환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이스팩”이란 각종 포장재에 물, 고흡수성수지(SAP, Super Absorbent Polymer) 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.
 2. “친환경 아이스팩”이란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 또는 물과 전분·소금 등을 배합한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보냉재를 말한다.
 3. “재사용”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 4. “아이스팩 순환”이란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는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을 따른다.

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하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(이하 “활성화 사업”이라 한다)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사업자는 친환경 아이스팩을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시행하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시가 시행하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아이스팩 순환의 유도) ① 시장은 아이스팩의 수거, 재사용 등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1. 재사용이 가능한 아이스팩의 사용
2.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
3. 그 밖에 아이스팩 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

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함의 위치, 수거 및 재사용 방법 등 아이스팩 순환 관련 정보를 관련 기업, 시민 등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업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(이하 “사업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활성화 사업의 목표와 추진 방향
2. 활성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
3. 활성화 사업 이행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방안
4.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
5. 그 밖에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사업비 지원 등) 시장은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아이스팩 수거함 구입비, 설치비, 조달수수료
2. 아이스팩 수거·세척·소독·수요처 운반 등 관련 관리 비용
3.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및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확대 사업을 위한 각종 홍보 비용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이행점검 등) ① 시장은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의 이행실태 점검 등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·점검을 할 수 있다.

② 활성화 사업의 비용을 지원받은 자치구는 분기별로 사업수행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사업완료 보고)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 종료 후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, 향후계획, 사업비 정산,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표창)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순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·단체 등에게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

(송재혁 의원 대표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3026 |
|----------|------|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29일

발 의 자 : 송재혁, 오한아 의원(2명)

찬 성 자 : 경만선, 김경영, 김기대,
김기덕, 김생환, 김재형,
김제리, 김태수, 김평남,
김희걸, 봉양순, 송명화,
송아량, 신정호, 이광성,
이정인, 장상기 의원(17명)

1. 제안이유

- 1인 가구 증가 및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쇼핑과 식음료 배달 주문이 활성화됨에 따라 아이스팩 사용량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.
-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이스팩은 플라스틱 성분의 젤이 들어 있는 형태로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버려짐에 따라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.
- 따라서 아이스팩 수거·재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며, 더 나아가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아이스팩의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장,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나.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 유도 및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계획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 ~ 제6조)

다. 이행실태의 점검 및 사업 종료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7조 ~ 제8조)

라.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에 관한
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의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 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이스팩”이란 각종 포장재에 물, 고흡수성수지(SAP, Super Absorbent Polymer) 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.
2. “친환경 아이스팩”이란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 또는 물과 전분·소금 등을 배합한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보냉재를 말한다.
3. “재사용”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4. “아이스팩 순환”이란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
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는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을 따른다.

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하여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(이하 “활성화 사업”이라 한다)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사업자는 친환경 아이스팩을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시행하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, 시가 시행하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아이스팩 순환의 유도) ① 시장은 아이스팩의 수거, 재사용 등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1. 재사용이 가능한 아이스팩의 사용
2.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
3. 그 밖에 아이스팩 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

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함의 위치, 수거 및 재사용 방법 등 아이스팩 순환 관련 정보를 관련 기업, 시민 등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업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(이하 “사업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활성화 사업의 목표와 추진 방향
2. 활성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
3. 활성화 사업 이행실태 점검 및 성과평가 방안
4.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
5. 그 밖에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사업비 지원 등) 시장은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다음

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아이스팩 수거함 구입비, 설치비, 조달수수료
2. 아이스팩 수거·세척·소독·수요처 운반 등 관련 관리 비용
3.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및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확대 사업을 위한 각종 홍보 비용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이행점검 등) ① 시장은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의 이행실태 점검 등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·점검을 할 수 있다.

② 활성화 사업의 비용을 지원받은 자치구는 분기별로 사업수행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사업완료 보고)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 종료 후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, 향후계획, 사업비 정산,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표창)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순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·단체 등에게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
| 문서번호 | 2021102100000002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

비용추계서

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요청인 : 송재혁 의원 | 담당 :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박주용 예산분석관 |
| 접수일 : 2021.10.21 | |
| 회신일 : 2021.10.27 | 내용문의 : 02-2180-7954 |

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목 차

- I. 비용추계 요약
-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6조(사업비 지원 등)에 따라 비용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안 제6조제1호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및 제6조제2호 아이스팩 수거소독 등, 제6조제3호 및 제4호 홍보비 지원

나. 전제

- 아이스팩 수거함은 서울시 426개 주민센터에 2022년 설치하는 것으로 전제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추계기간

- 2022년부터 2026년까지로 함(추계기간 이후로도 계속 발생)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 비용 ≒ 4,710,200천원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| | 연도 | 2022 | 2023 | 2024 | 2025 | 2026 | 계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| | | | | | | | |
| 세입 | - | | - | - | - | - | - | - |
| | 소계(a) | | - | - | - | - | - | - |
| 세출 |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(안 제6조제1호) | | 85,200 | - | - | - | - | 85,200 |
| | 아이스팩 수거소독 등 (안 제6조제2호) | | 900,000 | 900,000 | 900,000 | 900,000 | 900,000 | 4,500,000 |
| | 홍보비 (안 제6조제3호 및 제4호) | | 25,000 | 25,000 | 25,000 | 25,000 | 25,000 | 125,000 |
| | 소계(b) | | 1,010,200 | 925,000 | 925,000 | 925,000 | 925,000 | 4,710,200 |
| □ 총 비용(b-a) | | | 1,010,200 | 925,000 | 925,000 | 925,000 | 925,000 | 4,710,200 |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조도형

추계세제팀장 이원상

예산분석관 박주용

☎ 02-2180-7954

e-mail : pjooyong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안 제6조제1호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및 제6조제2호 아이스팩 수거·소독 등, 제6조제3호 및 제4호 홍보비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

2. 세부추계내역

-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= 85,200천원
= 수거함 단가×426개 주민센터×1년(2022년)
= 200천원×426개×1년
※ 수거함 단가 : 2021년 경기도 ‘아이스팩 순환 사업’ 예산의 아이스팩 수거함 제작 단가 200천원 준용
- 아이스팩 수거·소독 등 = 4,500,000천원
= 자치구당 연간 수거·소독 등 비용×25개 자치구×5년
= 36,000천원×25개×5년
※ 자치구당 연간 수거·소독 등 비용 : 2021년 경기도 ‘아이스팩 순환 사업’ 예산의 시·군당 연간 아이스팩 수거·소독 등 위탁관리비 36,000천원 (월 3,000천원×12월) 준용
- 홍보비 = 125,000천원
= 자치구당 연간 홍보비×25개 자치구×5년
= 1,000천원×25개×5년
※ 자치구당 연간 홍보비 : 2021년 경기도 ‘아이스팩 순환 사업’ 예산의 시·군당 연간 홍보비 1,000천원 준용

[참고자료] 2021년 경기도 ‘아이스팩 순환 사업’ 예산 사업설명서

[참고자료] 2021년 경기도 '아이스팩 순환 사업' 예산 사업설명서

| | | |
|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아이스팩 순환 사업(주민참여예산)(자체/지원) (사업명세서 1434페이지) | 정책사업 |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 |
| | 단위사업 | 자원순환 역량강화 |
| | 기준보조율(%) | 도 100 |
| | 위원회명 | 도시환경위원회 |

□ 예산 총괄표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총사업비 | 2019년 이전 | 2020년 투자 | | | 2021년 예산안 (C) | 2020년 본예산 대비 증감 (C-A) | 향후투자 | 비고 |
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|
| | | | 계 (A+B) | 당 초 (A) | 추 경 (B) | | | | |
| 계 | 220,000 | | | | | 220,000 | 220,000 | | |
| 국 비 | | | | | | | | | |
| 도 비 | 220,000 | | | | | 220,000 | 220,000 | | |
| 시군비 | | | | | | | | | |
| 기 타 | | | | | | | | | |

□ 사전절차 이행여부

| 중기지방 재정계획 | 투자심사 | 공유재산 관리계획 |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|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| 홍보물 사전심의 | 민간위탁 (대행) 사전심의 | 시범사업평가 사전심의 |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|
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반영 | 비대상 | 비대상 | 비대상 | 비대상 | 비대상 | 비대상 | 비대상 | 비대상 |
| 2020.10월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

□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

○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

(기준 : '20. 10. 31. 현재, 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예 산 확보액(A) | 사업비 집행 현황 | | | 집행률(%) (B/A) | 사업 시행방법 | | | 비고 |
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|
| | | 집행누계액 (B) | 계약액 | 집행(계약) 일 자 | | 도직접 | 재배정 | 시군 보조 | |
| 계 | | | | | | | | | |
| 2018년 | | | | | | | | | |
| 2019년 | | | | | | | | | |
| 2020년 | | | | | | | | | |

- '20년 추진 실적 : 해당 없음
- 사업추진 자체평가 : 신규사업

□ 사업 담당자

| 실국 | 과 | 팀 | 과장 | 팀장 | 주무관 |
|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환경국 | 자원순환과 | 자원재활용팀 | 임양선 (8008-3520) | 염호근 (8008-4257) | 박순영 (8008-4258) |

□ 세부사업 설명서

1) 사업 목적

- 배달문화 확산으로 아이스팩 사용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, 이에 재사용 가능한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필요 수요처로 제공하는 순환체계 구축

2) 사업 근거
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)
- 「경기도 자원순환기본조례」 제5조(도지사 등의 책무)

3) 사업 집행절차

○ 추진계획 수립(1월) → 사업추진 시군 선정(2월) → 사업비 교부(3월) → 사업추진(3월~11월) → 정산 및 결과보고(12월)

4) 사업 내용

- 사업위치 : 경기도
- 사업기간 : 2021. 1. ~ 12.
- 사업량 : 10개 시군
- 사업시행방법 : 시군 대행
- 사업시행주체 : 시군

5)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원 세부 내역 : 해당 없음

6) 산출 근거

(단위 : 천원)

| 편성목 (통계목) | 부기명 | 산출내역 | 2021년 예산안 | 2020년 예산 | 비고 (증감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계 | | | 220,000 | | 220,000 |
| 자치단체등이전 (자치단체경상 보조금) | 아이스팩 순환 | - 아이스팩 수거함 제작 200천원 × 150개 | 30,000 | | 30,000 |
| | | - 수거, 소독 등 위탁관리비 3,000천원 × 6월 × 10개 시군 | 180,000 | | 180,000 |
| | | - 홍보비 1,000천원 × 10개 시군 | 10,000 | | 10,000 |

7)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·평가·문제점 및 대책 : 해당 없음